

CJ 대한통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최종 무혐의

화우는 CJ 대한통운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사건 사고의 사실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①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②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③ 문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조항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입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본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현장에서의 예상 외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안의 수사 대응에 있어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안 및 혐의사실
2. 화우의 변론 및 검찰의 판단
3. 시사점

1. 사안 및 혐의사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넘어져 있던 이동식 방음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CJ대한통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②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무, ③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각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검찰의 판단

화우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공사현장과 문제되는 이동식 방음벽 관련 작업의 내용과 목적, CJ대한통운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시스템 전반을 분석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① 사고 현장에서의 이동식 방음벽 인상 작업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② 본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축, 운영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합리적 예견가능성의 범위 밖에 있어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본사 또한 이동식 방음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 본사와 현장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동식 방음벽에 관하여는 어떠한 종사자 의견도 개진된 바 없는 점, ④ 회사에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재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최근 판결 및 수사 경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수행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 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① 대표이사가 위험성평가 후 필요 조치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조치 위반이 발생했거나 이동식 방음벽 관련 작업내용이나 진행과정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대표이사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동식 방음벽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동식 방음벽 관련 작업의 진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까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CJ대한통운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본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현장에서의 예상 외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까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화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별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비정형 작업, 돌발작업, 현장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일시적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사례에 있어서는 이번 사례에 대한 판단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해 발생에 관한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법리적인 주장이 효과적으로 개진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김영기

T. (+82) 2 6182 8310

파트너변호사

E. kimyk@yoonyang.com

홍경호

T. (+82) 2 6003 7091

파트너변호사

E. khhong@yoonyang.com

김영민

T. (+82) 2 6003 7123

파트너변호사

E. kimym@yoonyang.com

홍성

T. (+82) 2 6003 7792

파트너변호사

E. shong@yoonyang.com